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의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1) 청렴과 공정

-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는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조세심판원은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신고의무를 7급 이상 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번 조치는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재산등록·변동신고, 취업심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 특히,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청렴윤리팀은 윤리강령의 마련·운영, 청렴교육, 행동요령 보급, 취약분야 점검, 상담·컨설팅,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여 사후통제를 보완한다. 전담 감사팀은 청렴윤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결합한 이중 관리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심판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개방적 인사운영

- 조세심판원은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를 중점 과제로 삼아, 외부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조세심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입직 직후부터 법령해석, 심판사건실무 등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도를 높인다.
- 아울러 심판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조세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재가 조세심판원 내 핵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개방적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효율과 혁신

- 조세심판원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건조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유사사건 검색 등 반복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심판관과 실무자의 판단 집중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 또한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과 1년 초과 장기미결사건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내 180일을 초과한 소액사건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금액은 작지만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한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담당부서별 관리계획과 과장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조세심판원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함께 소액사건·장기미결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속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공정성과 일관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투명한 제도 구축

- 조세심판원은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다 강화한다. 특히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심리과정과 논의 내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판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모든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를 사전 열람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그리고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45일마다 지연사유와 진행단계를 자동 통보하는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이처럼 회의 운영, 사건조사서 열람 등 전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심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

-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민간참여 확대와 공정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비상임심판관의 완전 풀링제도(완전 Pool제)**를 도입하여,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심판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 또한, **비상임심판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전풀링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비상임심판관의 신규 및 재위촉 과정에서 **비상임심판관 위촉 추천위원회 신설·운영**을 통해 외부 신뢰도 및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개혁 추진 체계

-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가 실무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6년 5월부터 10월 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한다.

- 혁신팀은 개혁방안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 본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혁신기간 종료 후에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관TF**를 출범해,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TF는 내부 토론 및 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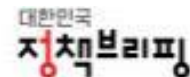
스토밍을 정례화하고 직원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 또한 매년 11월 민관TF에서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성과와 보완과제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조세심판원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작년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진재 (044-200-1710)
	조세심판원	담당자	서기관	백재민 (044-200-1721)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2026. 5.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I.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신뢰확보를 책임지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심판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보유
 - 사회전반의 청렴요구와 공정성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 스스로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
- ⇒ 청렴·공정·투명한 심판문화를 선도하고 효율·혁신적인 심판제도 구현을 통한 모범 행정심판기관으로 도약

2. 기본방향

- 민간참여와 투명성 강화로 공정성 제고
 - 공정한 사건처리와 청렴윤리 제도화를 위한 감시·평가시스템 구축
 -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민간참여의 실질적 기능 확보
-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전환
 - 심판절차 주요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참여 기반 강화
 - 전문인력과 공정한 조직문화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운영 실현
-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심판제도 구현
 -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 도입으로 사건처리 합리성·신속성 제고
 - 사건 특성 별 차별화된 처리기준 마련 및 장기미결사건 해소 등 심판운영 효율 강화

Ⅱ. 현황

1. 기능 및 연혁

- (기능) 위법·부당한 국(관)세·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준사법절차*에 따른 심리를 거쳐 납세자를 구제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 대심적 심리구조, 조세심판관회의의 독립적 운영,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 조세심판에서 납세자가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과세관청은 불가)

- (연혁)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후 2008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독립

국세기본법 제67조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필수적 전치주의로서의 행정심 조세불복절차* 중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조세심판원을 선택 (5개년 평균 90.5%)

*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국세청(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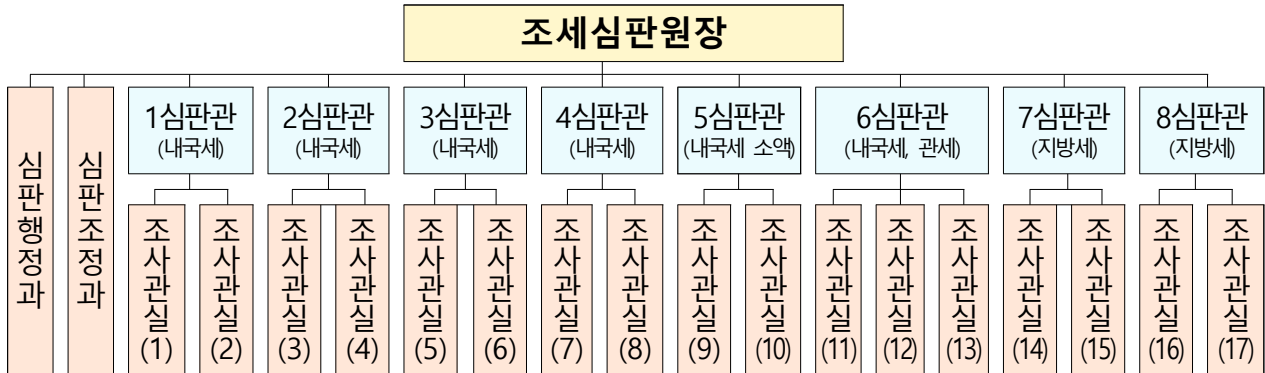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내국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세심판원	접수건수	4,598	8,712	7,180	8,452	11,030	6,200
	선택률	88.6	92.2	87.8	91.1	94.6	86.5
국세청	접수건수	420	400	370	489	396	730
	선택률	8.1	4.2	4.5	5.3	3.4	10.2
감사원	접수건수	172	335	625	340	237	235
	선택률	3.3	3.5	7.6	3.7	2.0	3.3

-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제(재경부)·세정기관(국·관세청)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성·중립성·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기대와 신뢰 반영(국회입법조사처, '24.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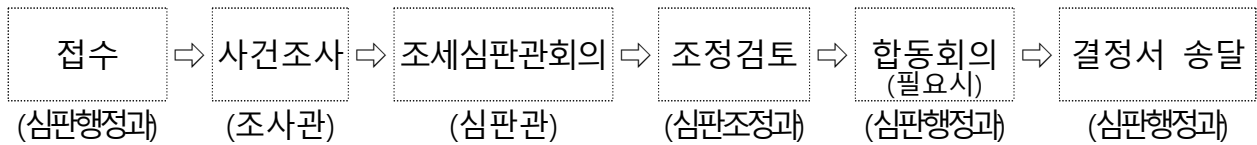
2. 조직 및 운영현황

- (조직) 원장 1명, 상임심판관(국장급) 8명, 과장급 19명 등 총 122명



- (결정)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

- 조세심판관회의 : 4명(상임 2, 비상임 2)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9개 심판관회의(내국세 5, 소액 1, 관세 1, 지방세 2)를 매주 개최하여 과반수로 심리의결(관세는 격주)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 상임·비상임심판관(15~20명 내외)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심리·의결(월 1회 개최)



- (통계) 국제거래 증가 등 청구사건의 복잡화 및 양적 증가 상황*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

(단위 : 건)

구 분		'08	'13	'18	'22	'23	'24	'25
처리대상 건수(A)	전년 이월	1,871	1,834	1,600	4,441	3,249	3,545	3,178
	당년 접수	5,244	7,883	9,083	10,373	16,781	9,811	7,225
	(합계)	7,115	9,717	10,683	14,814	20,030	13,356	10,403
처리건수(B)		5,316	7,314	7,638	11,565	16,485	10,178	7,996
사건처리비율(B/A, %)		74.7	75.3	71.5	78.1	82.3	76.2	76.9
평균처리일수(일)		163	148	173	234	172	185	225
인용률(%)		24.5	25.1	20.1	14.4	20.9	27.3	23.5
의견진술비율(%)		20.7	41.8	27.0	48.2	40.6	43.9	47.7

* 심판관 1인당 1,142건(배심 고려 시 2,284건), 사무관 1인당 131건 처리('25년 기준)

목표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개방과 혁신으로 신뢰받는 조세심판원

추진 전략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1. 청렴과 공정	1-1 자체 윤리강령 수립 및 시행 1-2 재산신고 대상 및 취업심사 강화 1-3 직원 보호조치 적극 시행 1-4 감사 및 청렴관리 체계 고도화
2. 개방적 인사운영	2-1 신규 인력확대 및 전문인재 육성체계 구축 2-2 상임심판관 등 인력증원
3. 효율과 혁신	3-1 AI 기반 스마트 조세심판 구축 3-2 소액 및 장기미결사건 신속처리 3-3 고액사건 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3-4 사건조사서 내부 활용 강화
4. 투명한 제도 구축	4-1 심판관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4-2 사건관리 절차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 4-3 인적 투명성 제고
5.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	5-1 비상임심판관 완전 Pool제 시행 5-2 비상임심판관 인력 확대 5-3 비상임심판관 평가제도 신설

- ⇒ ① 조세심판원 혁신TF팀 운영[국무1차장(팀장)]
 ▶ '26.5월~10월을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지정 → 매달 혁신상황 점검
- ② 이후, 민관TF 구성 → 민간참여 및 토론기반 혁신 지속

Ⅲ. 추진과제

1

청렴과 공정

1-1

자체 윤리강령 수립 및 시행

-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업무 접촉행위 금지
 -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 보고의무 부여
 - 외부인의 조세심판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
- * (예시) 조사진행에 관한 정보입수행위, 처리시기의 조정 등 사건과 관련된 청탁 등
- 심판조정과의 외부접촉행위 전면차단 → 완전한 White Zone 마련
 - 구성원 비공개 및 외부 유선전화 차단, 모든 외부인과 접촉 금지
 - 심판조정과 배치 전 서약서 징구 및 일반직원보다 강한 책임 부여
- 대리인 소통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한 소통문화 조성
 - 면담실 방문설명 사전신청제 도입 → 비공식적 의사소통 차단
 - 선임된 대리인 외 타인(전관 포함)과의 업무관련 의사소통 전면 금지
- 비상임심판관 회의일정 비공개 및 불필요한 회의 일정변경 등 금지
 -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참석 날짜 외부 비공개 철저 → 외부 노출 시 해당 비상임심판관을 심판관회의에서 제척
 -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일정 변경 및 심리연기 금지

1-2 재산신고 대상 및 취업심사 강화

- 현재 조세심판원 재산신고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
- 재산신고 의무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업무담당자까지 재산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⑥·8호에 따라,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재산신고 의무대상에 포함됨
- 재산신고 대상자 확대를 통해 7급 이상 공무원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킴

1-3 직원 보호조치 적극 시행

- 직급·상황별 행동요령 마련 및 상시 컨설팅 제도 실시
 - 압력·청탁·폭언 등 사례별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보호조치 요청 절차(보고·상담·비공개 보호)를 체계화
 - 상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발생 갈등·애로사항을 즉시 상담·지원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지속 제공

1-4 감사 및 청렴관리 체계 고도화

- 조세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및 국무조정실 본부 전담 감사팀 신설
 - 조세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설치 및 운영
 - 기관 특수성 및 취약요인을 감안한 맞춤형 청렴윤리 전담팀 설치
 - 직급·상황별 행동요령 마련·시행, 직원 청렴교육,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등 청렴도 제고 업무 수행
 - 총리실 본부(법무감사담당관실) 내 소속기관 전담 감사팀 신설
 - 소속기관의 기관운영 점검 내실화, 공직윤리 점검 등 관리체계 구축
 -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 보강

2

개방적 인사운영

2-1

신규 인력확대 및 전문인재 육성체계 구축

- 신규 인력배정을 통한 자체 인력풀 확보
 - 신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편중된 외부 인력 의존도 완화 추진
 - 신규인력은 입직 직후부터 법령해석, 심판실무 등 핵심 역량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받도록 지원 → 신규인력 전담 교육프로그램 마련

2-2

상임심판관 등 인력증원

- 상임심판관 등 조세심판 인력증원
 -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복잡·전문화 및 심리기간 단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인력 확대 추진
-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한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3

효율과 혁신

3-1

AI 기반 스마트 조세심판 구축

- 사건조사서 작성 등에 AI를 도입('26.9월 실시)
 - 청구이유서와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쟁점분석 및 사건조사서 초안을 작성 → 심판업무 효율성 증진
- 청구인을 위한 AI 청구이유서 작성 및 검색엔진 도입('27년)
 - 청구이유를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청구이유서 자동작성 및 유사 선결정례 검색 → 국민접근성 향상
- AI 프롬프트 및 활용 가이드라인(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3-2 소액 및 장기미결사건 신속처리

- 소액·장기미결사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 추진
 - 민생과 직결된 소액사건에 대해서 별도관리대상으로 지정
→ 상반기 내 180일 초과 소액 미결사건을 모두 처리
 -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은 상반기 내 50% 이상 감축
- 장기미결 처리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담당자 개별책임제에서 벗어나, 과장책임제 (부서단위 운영책임) 도입
 - 심판부 별 미결사건 정보 DB화, 사건별 처리현황을 주기적 관리·점검
 - 장기미결사건에 관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항목 도입

3-3 고액사건 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액사건의 경우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3-4 사건조사서 내부 활용 강화

- 사건조사서 공유기반 조성
 - 사건조사서 원문을 내부 업무망에 등재하고, 전직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 담당자 간 사례학습을 통해 조사서 작성품질 상향평준화
 - 내부 직원이 열람 후 '좋아요' 표시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구성원이 공감하는 우수 사건조사서 평가제도 도입
- 동일쟁점 사건의 통합처리
 - 유사하거나 동일한 쟁점을 가진 사건은 단일 담당자에게 병합배정한 후 해당 인력이 전담 처리 → 심리 연속성 및 판단 일관성 확보

4

투명한 제도 구축

4-1

심판관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공개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동회의를 납세자 동의 하에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이 심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심판관의 의견서 작성제출 의무화
 - 모든 심판관은 회의 시 자신의 판단근거를 문서형태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서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화하되, 의견서는 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4-2

사건관리 절차의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

-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의무화
 -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의무화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
-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 고도화
 - 45일마다 사건진행현황, 지연사유 등을 자동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사건조회항목(진행단계, 항변서 접수현황 등)을 세분화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정보 제공
- 공정한 사건배정 체계 마련
 - 사건의 무작위 배정 시 배정시간(초)까지 기록하는 등 공정성 제고

4-3 인적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관 명단·소속·전문분야 홈페이지 공개
 - 조세심판관회의의 독립성·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판관의 명단 등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
 - 청구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 해당 명단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피신청의 실질적 권리 보장
 - 심판참여자 구성에 대한 국민의 사전확인과 견제 기회를 제공

5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5-1 비상임심판관 완전 Pool제 시행

- 비상임심판관 완전 Pool제 시행
 - 현재,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4명) Pool제로 운영
 -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특정 가능
 - 비상임심판관 전원을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노출 차단

5-2 비상임심판관 인력 확대

- 비상임심판관 인력의 단계적 확대
 - 현행 36명 수준의 비상임심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완전 Pool제의 실효성을 확보

5-3 비상임심판관 평가제도 신설

- 비상임심판관 위촉 추천위원회 신설·운영
 - 비상임심판관 신규 또는 재위촉 시 (재)위촉 추천(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외부 신뢰도 및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 내부 의견을 반영한 다면적 평가체계 구축
 - 비상임심판관 평가 시 내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체감도, 협업도, 사건심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IV. 추진체계

1 조세심판원 혁신팀 운영

-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 운영
 - 2026.5월~10월(6개월간)을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여 매달 혁신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은 본부차원에서 지원
 - 11월 자체평가점검 실시 : 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2 민관TF 구축·운영

- 혁신기간 종료 후 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합동 혁신 TF 운영
 - 총리실 본부와 조세심판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혁신 TF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 내부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내부 의견 수렴 정례화하여 반영
 - 매년 11월 민관TF 혁신상황 점검 → 12월말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